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7.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일 : 2010. 7. 9.

상호	대표	방송구역	심사결과	시청자의견
진영유선방송사	김광옥	경남 김해 진영읍 전역	재허가	없음
중부유선방송사	조상범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전역		
지정유선방송사	안상호	경남 의령군 지정면 전역		
인천중구중계유선방송사	이의순	인천 중구 용유동, 영종동 전역		
부천중계유선방송사	한승기	원종동, 고강동, 성곡동, 오정동 일원		

끝.